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대표회원, 인천등 서해안 지역 대형개발현장 견학



우리시회는 지난 10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대표회원 대상으로 인천과 서해안 대형개발현장을 견학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대표회원과 동반자를 포함하여 28명이 참석하였는데, 현재 각종 대형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어 타지역보다 활력이 넘치는 인천과 당진 지역 일대를 둘러봄으로써 대구 건설업의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경영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뜻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에 둘러본 주요 개발현장은 인천대교 건설현장, 송도국제신도시 개발 현장, 인천도시축전, 당진 현대제철 건설현장 등인데 각 방문 현장마다 관련 관계자로부터 개발규모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내 대형 건축현장 견학



우리시회는 10월 26일 회원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현장 견학행사를 실시하였다.

최고 높이 54층의 주상복합현장으로서 대구에서 지금까지 단일 현장으로서 최대 규모로 현장소장 이병화 상무로부터 공정관리사례, 공법 등 전반에 걸친 설명을 직접 듣고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회관 리모델링 설계사 선정

우리시회 건설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사 선정을 위한 지명입찰 참여사에 대한 10월27일 개최된 『대구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심사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다수의 업무용시설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경험이 있는 (주)현대디앤씨가 선정되었다.

설계용역기간은 45일이며 중간보고를 통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심사할 계획이며 12월 중순경 설계서가 납품되면 회원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간사(幹事) 명칭 변경

본회 제1회 이사회(09.10.6)에서 협회 기본규정인 『시·도회 설치규정』이 개정되어 “간사” 및 “간사회” 명칭이 각각 “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대구성서비즈니스센터 입찰참여업체 확대

한국산업입지공단(이사장 박봉규)이 공사예정금액 133억원 정도의 “대구성서비즈니스센터 건축공사”를 대구소재업체로 지역제한하여 지난 10월15일 조달청을 통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조달청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경우, 수행능력평가 만점 업체가 대구에서는 1개사 정도에 불과하여 다수의 업체로부터 입찰참여 확대 조치를 강력히 요구받은 한국산업입지공단 관계자가 직접 우리시회 사무처를 방문하였다.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대구업체 중 실질적인 입찰가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공단에서는 검토결과 10월 23일 재공고를 통하여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이 허용되어 이전보다는 다소 많은 업체들이 동 입찰에 참여가능하게 되었다.

업무부 직원 모임 체육대회 행사 지원

회원사 업무부 직원간 상호 친목도모와 체력단련을 위하여 구성된 8개 모임간 연합체육대회(팔공회 주관)와 “건설FC”의 우리시회, 경북도회, 건설공제조합 직원 초청 친선축구대회가 지난 10.10(토) 및 10.24(토)에 각각 개최되었으며 우리시회 조종수 회장이 격려금을 지원하였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동향

기획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약제도개선 추진위원회 및 공청회(8.19) 논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자율화, 내역입찰제도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

■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3조의2)

- (대상 자율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의무화 하되, 나머지 공사는 PQ대상공사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기준 자율화) PQ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PQ심사시 실적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공사이행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의 성실도항목(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 의무 반영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내역입찰제도 개정(시행령 제14조①⑥⑦, 부칙 제5조)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에 대한 수정허용(물량내역서 수정제도)

현행	개정안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대로 제출 - 대상공사 : 100억원이상 공사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에 대해 수정 허용 - 대상공사 : ('10) 1,000억원 이상 공사 → ('11년) 500억 이상 → ('12년) 300억 이상 ※ 100억원~300억원미만은 '12년 이후에도 현행방식 적용

- 입찰자가 물량을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 임의규정으로 도입
 - (현행)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
 - (개정안) 입찰자가 물량내역서 작성하여 제출

※ 시행일 : 순수내역입찰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물량내역서 수정제 신설 및 순수내역입찰제 공사의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가능(시행령 제65조)

- 단순한 물량의 누락·오류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금지

- 다만,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인 경우에는 계약금액 변경을 허용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이상→100억원이상) 시기 유보

(시행령 제42조④)

- (당초 정부계획) '08. 1월부터 → (개정안) '12. 1월부터

※ 협회건의 반영, 중소기업 보호경기상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확대유보

■ 연대보증제 단계적 폐지

(시행령 제52조, 부칙 제1조③, 시행규칙 제66조, 부칙 제1조)

- 턴키대안 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

- 300억원 미만공사는 계약보증금(20%)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현재 300억원 이상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무효화

■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시행령 제14조의2④)

- (현행)100억원이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 (개정안) 삭제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시행령 제50조⑥)

- (현행)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 → (개정안)5천만원이하

※ 시행일 :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조달청은 적격심사 평가자료의 제출일시를 명확히 하고,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수의계약으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을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9.10.21)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 적격심사 평가자료의 제출일시 명확화

(제2조 제3항 제1호, 제5호 나1목)

- (종전)입찰마감일 현재 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개정)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하도급자 보호규정 신설

([별표6] 주4,5)

- 수의계약으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하는 경우
 - 하도급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을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 직접공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경비) -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 시행일 : '09.10.26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건물현관 입구설치 점자블록 적정시공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최근 신축되는 건물의 현관입구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들로 많이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적정시공을 요청하여 왔다.

또한 시공이나 유지보수중에 기존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매트나 형 겹, 종이박스로 덮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편의시설증진법' 위반으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부과 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점자블록 적정시공 요청사례

- 건축시공시 편의증진법에 위반되지 않는 점자블록으로 시공
-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 및 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재활보조기구 공모전에 입선한 카펫매트형(후킷부착형) 점자블록을 건물현관입구에 기존 점자블록과 비교 선택하여 시공 요망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시공시 가능한 한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사전협의 요망 (☎ 253-2655)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기준

국토해양부는 금년에도 내년초까지 실질자본금 부실혐의 건설업체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 실시를 계획하고 있어 회원사의 주의가 요망되므로 주요 자산계정항목에 대한 실태조사시 검토서류를 정리하여 본다.

자산계정	검토서류 목록
현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명세서 (자산총계 2% 초과금액 부실처리)
예 금, 보통예금, 정기에적금, 장기성예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등 명세서(30일동안 은행거래 평잔액으로 평가) - 금융기관 발급예금잔액증명서(인출제한 내역 기재분) 첨부 - 결산일 전후 각 1개월분 거래실적증명서, 정기에적금 - 결산일 1개월 후 예금잔액증명서(필수)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 제출하며, 결산일 전 입금된 예금 중 입금일 이후 1개월 이내 출금된 경우(정기예금 및 적금이 해약된 것 포함) 그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의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 입증서류
*계정에 불문 국 공 채,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등 명세서 - 국공채 등 :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발급한 유가증권 잔고증명 - 국공채의 경우 상기 잔고증명이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일 현재 국공채원본, ·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내역(시기내용, 거래상대방등이 확인가능한 사항) 및 매각대금의 수령에 관한 금융거래 자료 ※ 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제출하며, 매각대금의 입금일이 속한 해당월의 1개월간 거래실적을 제출하고, 입금된 매각대금이 입금일 이후 1개월내 출금된 경우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이 경상적 경영활동에 의한 출금임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명세서 - 공사대금 청구분 :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 진행기준 적용분 : 도급계약서 사본 - 공사진행율에 의한 공사수익의 계산 명세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 내역 포함 · 현장 감리원의 결산일 전후 기성확인서 포함
임차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명세서(임대인과의 관계 명시)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실제지출 통장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재고자산 (가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제 명세서 - 취득시 세금계산서, 취득일자 - 현장별 감도 또는 손료 계산 내역서
미완성공사 (미성공사), 미완성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당해 현장의 도급계약서 - 공사대금 청구 내역 및 매출세금계산서 - 미완성주택은 분양현황표 및 가구별 원가 안분 내역표 추가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3동 33-10 법무빌딩 406호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6-2607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

1. 사 례

건설업체 甲이 건축주 乙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1.1. 부도로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고, 이때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채권은 3억원이었다. 한편 건설업체 甲의 채권자 丙이 2009.1.31. 위 공사대금 3억원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발부받았다. 그런데 건축주 乙이 위 압류추심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건설업체 甲의 인부들의 압박에 못 이겨 체불된 노임조로 2억원을 지급해 준 경우, 과연 건축주 乙은 압류추심 채권자인 丙에게 얼마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 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동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위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위와 같이 건설 노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건설노임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

- 가. 압류추심명령의 경우에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 나. 전부명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히 무효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 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에 근거한 지급청구에 대하여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3억원 중 2억원은 미지급된 건설노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丙이 한 3억원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그 중 체불노임에 해당하는 2억원에 대하여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주 乙은 압류추심채권자 丙에게 1억원 만을 지급해 주면 될 것입니다.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9.10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746,000	국제철스크랩가 하락 및 수요감소에 따른 재고증가로 가격하락 추세이며 계강사와 건설사의 가격 줄다리로 쉽게 최종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음. 수급은 원활한 편임.	0단위: M/T 0현장도착도
		D13mm	736,000		
		D16mm	731,000		
	고장력 철근	D10mm	751,000		
		D13mm	741,000		
		D16mm	736,000		
후판	SM490B	880,000	최근 조선업계 수요증가로 건설업체 수급에 애로 겪고 있음	0단위: 개 0현장도착도	
H형강	100X100X6X8mm	850,000	국제철스크랩가 하락 및 수요부진으로 5.5% 인하되었으 며 수급 원활함	0단위: M/T 0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850,000			
	400X400X13X21mm	900,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650	가격 안정적이며 수급상황도 원활함	0단위: 포 0대리점-수요자 작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레미콘	# 57(25-240-15)	51,900	레미콘업계에서 공정거래위 원회에 카르텔 예외신청 중	0단위: m³ 0현장도착도	
	#467(40-240-15)	50,900			
벽돌	㉔190X90X57mm	45	수급 원활함	0단위: 개 0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20,000	전체적으로 수급에 큰 어려움 없음	0단위: m³ 0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잡석 #467 40mm	12,000			
	쇄석 #57 25mm	9,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1,020	국제환경단체 발목지양등 공급감소 요인으로 가격인상소 지 있으나 수급 원활함	0단위: 才 0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180			

회 원 현 황

회원수 : 172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0	62	16	3	1	172	-
중 구	9	2		1		12	
동 구	10	8	2	1		21	
서 구	4	3			1	8	
남 구	10	5	1			16	
북 구	9	13	2			24	
수성구	25	21	2			48	
달서구	8	8		1		17	
달성군	15	2	9			26	

※ 전입1, 전출1

전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전입신고일자	전화번호
(주)엘포즈 (경북에서)	토목160237 건축130230	이 인 규	2009.10.06	616-0510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소재지	범진종합건설(주)	대구 달성군 옥포면간경리 868-1	대구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128-3	631-3413
대표자	(주)신고려	김 상 욱	최 진 출	653-3164
대표자 소재지 상호	(주)신한건설산업	김 재 관 대구 서구 원대동2가 98-3 (주)선일종합건설	한 승 회 경기 광명시 소하동 1075-6 (주)신한건설산업	02) 848-2641
건설업체 간합명	(주)엘포즈	(주)삼미건설 (주)엘포즈	(주)엘포즈	616-0510

건교부 위탁업무 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기 간	신규	주기적신고	기재사항변경	양수도(합병)	계
금 월 (2009.10.01~10.31)	4	6	10	-	20
누 계 (2009.01.01~10.31)	19	107	81	2	209



영남권하도급 특별교육 실시

○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구 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부산-영남권	'09.11.26(목), 13:30~17:30	부산건설회관 강당

○ 교육대상자

-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사본 제출)
-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

교육대상자	벌점감점	혜 택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1점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 서 감점 처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점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0.5점	

본회 홈페이지 “회원사 홍보관” 이용

-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위치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등록비 : 무료
- 홍보관 개설 업체명을 일정기간 메인화면에 무료 광고
- 등록내용

사업자번호, 회사명, 대표자, 전화/팩스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명, 담당자 이메일, 회사로고(300×200pixel), 동영상첨부, 회사 소개, 회사연혁, 비전 및 경영철학, 수상이력, 주요공사실적

※시공능력공시현황(최근년도) <==협회에서 자료 제공



회 장 등 정

대표회원 인천 및 서해안지역 견학행사

- 기 간 : 2009. 10. 7(수) ~ 8(목)
- 하신일 : 행사주제 및 회원 친목도모

대구광역시 건설관련 전직 간부(국장급) 초청 간담회(17명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9. 10. 14(수) 19:00 청맥한정식
- 하신일 : 지역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요청

2009 건설업계 제주 연찬회 참석

- 기 간 : 2009. 10. 29(목) ~ 30(금)
- 하신일 : 건설업 현안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

전임 대구시회장 초청 친선경기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9. 11. 1(일) 청도 그레이스C.C
- 참석자 : 재임 중 회원 단합과 권익보호 및 협회발전에 기여하신 이지웅 회장, 도재덕 회장, 이홍중 명예회장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다